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의안번호 2946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1. 12.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I . 2022년도 예산안 개요<sup>1)</sup>

## 1. 예산안 편성방향

- 서울시교육청은 '22년도 서울교육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①다시 일상으로, 교육(학력) 회복 지속 지원, ②공교육의 시작, 질높은 출발선 보장성, ③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미래교육 실현, ④건강한 삶의 기초, 행복 근육(4-H)다지기, ⑤꿈을 담은,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으로 설정하고
  
- 초등학교 교과보충 집중지원, 중·고등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 고교 무상교육지원, 중1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기기 구입 및 디지털 튜터 운영, 서울 학생기초학력 보장,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학교자율운영체제 안착을 위한 재정지원, 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에듀테크 활용 개별 맞춤형 교육, 학생들의 체력회복과 건강지원, 쾌적한 수업환경 인프라 조성 및 친환경 학교시설 현대화 등,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발표함

## 2. 예산안 편성규모

- '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 5,802억 6,900만원으로, '21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된 예산 11조 5,836억 3,200만원보다 △8.7%, △1조 33억 6,300만원 감소된 규모임

〈표 1-1〉 2022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륜
예 산 액	10,580,269	11,583,632	△1,003,363	△8.7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 3. 예산안 개요

#### (1)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규모

- '22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규모는 10조 5,802억 6,9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9조 7,419억 9,300만원) 대비 8.6%, 8,382억 7,5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이나, 최종예산에 근접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11조 5,836억 3,200만원)과 비교하면  $\Delta$ 8.7%,  $\Delta$ 1조 33억 6,300만원 감액 편성 요청된 것임
- 세입예산은 ①이전수입 10조 1,340억 1,100만원, ②자체수입 1,120억 1,200만원, ③기타(전년도 이월금, 금융자산회수) 3,342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고
- 세출예산은 ①인건비 6조 5,863억 7,700만원, ②경상비 9,152억 2,300만원, ③교육·시설사업비는 2조 8,860억 6,700만원, ④지방교육채 및 BTL상환, 기금전출금 1,306억 1,300만원, ⑤예비비 및 기타 619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2) 세입예산

- '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Delta$ 8.7%,  $\Delta$  1조 33억 6,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10조 5,802억 6,900만원임
- **이전수입**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Delta$ 9.0%,  $\Delta$ 1조 12억 1,300만원 감소한 10조 1,340억 1,100만원으로 '22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의 95.8%를 차지함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6조 665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Delta$ 9.6%,  $\Delta$ 6,459억 2,600만원 감소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조 587억 6,700만원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Delta 7.9\%$ ,  $\Delta 3,473$ 억 3,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 기타이전수입은 '21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Delta 47.7\%$ ,  $\Delta 79$ 억 5,200만원 감소한 87억 3,200만원 편성된 것임
-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의 1.1%에 해당되며, 토지매각 감소 등에 따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Delta 8.3\%$ ,  $\Delta 100$ 억 8,700만원 감액된 1,120억 1,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교육환경개선 및 공립학교 신·증설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발행되나, '22년에는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이 없어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및 금융자산회수로 3,342억 4,6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1-2〉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증감률
		예산안	구성비	추경예산	구성비		
합	계	10,580,269	100.0	11,583,632	100.0	$\Delta 1,003,363$	$\Delta 8.7$
이	전 수 입	10,134,011	95.8	11,135,224	96.1	$\Delta 1,001,213$	$\Delta 9.0$
	중앙정부	6,066,512	57.3	6,712,438	57.9	$\Delta 645,926$	$\Delta 9.6$
	지방자치단체	4,058,767	38.4	4,406,102	38.0	$\Delta 347,335$	$\Delta 7.9$
	기타	8,732	0.1	16,684	0.1	$\Delta 7,952$	$\Delta 47.7$
자	체 수 입	112,012	1.1	122,099	1.1	$\Delta 10,087$	$\Delta 8.3$
기	타	334,246	3.2	326,309	2.8	7,937	2.4

### (3) 세출예산

#### 1) 총계규모

□ '22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21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Delta 8.7\%$ ,  $\Delta 1$ 조 33억 6,300만원이 감액된 10조 5,802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2) 성질별 자원 배분

○ **인건비**는 세출예산의 62.3%, 6조 5,863억 7,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4.6%, 2,873억 5,200만원 증액 편성된 바,

- ①공·사립 교직원 및 계약제 교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기본급 인상, 호봉승급 및 법정부담금 요율 변경에 따른 증액분, ②지방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가, 교원 명예퇴직 예상인원 증가로 인한 증액분, ③맞춤형복지비 자율항목 추가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됨

○ **경상비**는 '22년도 세출예산의 8.7%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Delta 3.5\%$ ,  $\Delta 334$ 억 5,800만원 감액된 9,152억 2,3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 **사업비**는 '22년도 세출예산의 27.3% 규모로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Delta 24.1\%$ ,  $\Delta 9,187$ 억 6,300만원 감액된 2조 8,860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 **교육사업비**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Delta 8.5\%$ ,  $\Delta 2,100$ 억 8,400만원 감액된 2조 2,490억 7,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이전수입 감소 및 정책사업 자체정비 결과에 따른 감액분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 **시설사업비**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Delta 52.7\%$ ,  $\Delta 7,086$ 억 7,900만원을 감액한 6,369억 8,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신·증설 사업물량 감소, 보통교부금 감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 됨
  
- **재무활동**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Delta 69.3\%$ , 2,949억 2,800만원 감액된 1,306억 1,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21년도에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함에 따라 '22년도에는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이 없어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것임
  
- **예비비 및 기타**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액(1,055억 5,500만원) 대비  $\Delta 41.3\%$ ,  $\Delta 435$ 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0억원과 국고보조금 및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519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1-3〉 세출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2 년 도		2 0 2 1 년 도		증 감	증 감 륜
		예 산 안	구성비	추 경 예 산	구성비		
합	계	10,580,269	100.0	11,583,632	100.0	△1,003,363	△8.7
인	건 비	6,586,377	62.3	6,299,025	54.4	287,352	4.6
	공 무 원	4,477,565	42.3	4,308,707	37.2	168,858	3.9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826,305	7.8	732,971	6.3	93,334	12.7
	사 립 학 교	1,282,507	12.1	1,257,347	10.9	25,160	2.0
경	상 비	915,223	8.7	948,681	8.2	△33,458	△3.5
	교육행정기관 운영 비	33,000	0.3	31,639	0.3	1,361	4.3
	학 교 운 영 비	882,223	8.3	917,042	7.9	△34,819	△3.8
사	업 비	2,886,067	27.3	3,804,830	32.8	△918,763	△24.1
	교 육 사 업 비	2,249,079	21.3	2,459,163	21.2	△210,084	△8.5
	시 설 사 업 비	636,988	6.0	1,345,667	11.6	△708,679	△52.7
재	무 활 동	130,613	1.2	425,541	3.7	△294,928	△69.3
	지 방 채 등 상 환	52	0.0	322,702	2.8	△322,650	△100.0
	B T L 상 환	102,392	1.0	102,839	0.9	△447	△0.4
	기 금 전 출 금	28,169	0.3	-	-	28,169	순증
예	비 비 및 기 타	61,989	0.6	105,555	0.9	△43,566	△41.3
	예 비 비	10,000	0.1	11,220	0.1	△1,220	△10.9
	반 환 금	51,989	0.5	94,335	0.8	△42,346	△44.9

## Ⅱ .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 1. 2022년도 예산안의 특징

#### (1) 세입예산 검토개요

□ '22년도 세입예산안은 10조 5,802억 6,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세입예산의 경우, 교육부가 예산에 편성하고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를 일부 유보하는 유보액이 증가하여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감소하고, 비법정전입금도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이전수입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11조 1,352억 원)보다 △9.0%, △1조 12억 1,300만원 감소한 바,

- 총 세입규모가 △1조 33억 6,300만원 축소됨에도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검토됨

○ 교육청의 세입구조가 대부분의 재원을 외부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현 상황에서 증가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며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서울시 비법정전입금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 세출예산 검토개요

- '22년도 세출예산은 10조 5,802억 6,900만원을 편성한 바,
  
- '22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6조 5,863억원), 학교운영비(8,822억원), BTL상환(1,023억원) 등을 포함하여 예산총액 중 경직성경비 편성규모가 증가하고, 누리과정지원(5,258억원), 고교무상교육(2,430억원), 초·중·고 무상급식(5,116억원), 유치원급식(385억원),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607억원), 중·고 입학준비금(430억원) 등의 교육복지사업비 또한 증가하였으나, 교육·시설사업비 편성규모는 금년도 보다  $\Delta 24.1\%$ ,  $\Delta 9,188$  억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경기동향에 따른 세입환경의 유동성에 대비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 교육복지사업비의 확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교육 투자 등 새로운 세출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용이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됨

## 2. 예산총칙의 적정성

-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예산의 이·전용, 성립전 예산 등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 제2조 계속비사업,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명시이월사업, 제5조 지방채발행 한도액, 제6조 일시차입금 최고액, 제7조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 제8조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9조 성립전예산 및 간주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명시이월사업(제4조)**은 133건, 585억 3,9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것인 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지방교육채 발행한도액(제5조)**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인 바,
  -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22년 지방교육채 발행한도액을 8,072억 900만원으로 산정하여 교육부에 통보하고 '22년도 예산편성안중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제출하였으나, '22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일시차입금 최고액(제6조)**은 '22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의 10%인 1조 580억 2,600만원으로 설정하여 제출된 바,

- 일시차입금은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연도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17년 이후) 일시차입금이 운용된 사례는 없음
- **예산의 전용(제7조)**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운용하는 제도임
  -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전용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22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중 제7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예산전용의 조건을 열거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의 이용(제8조)**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각 정책사업 간 예산을 변경·집행할 수 있는 제도인 바,
  -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총칙 제8조를 통해 공무원 보수(총액인건비 포함) 등 6개 항목에 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성립전예산 및 간주처리(제9조)**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회계연도중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은 성립전 사용예산을 동일 회계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목적지정지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할 수 있는 단서를 예산총칙에 포함시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 3.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 '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0조 5,802억 6,900만원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11조 5,836억 3,200만원) 대비 △8.7%, △1조 33억 6,300만원 감액 편성 요청된 것임

〈표 2-1〉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2 년 도		2 0 2 1 년 도		증 감	증 감 륜
		예 산 안	구성비	추 경 예 산	구성비		
합	계	10,580,269	100.0	11,583,632	100.0	△1,003,363	△8.7
이	전 수 입	10,134,011	95.8	11,135,224	96.1	△1,001,213	△9.0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6,066,512	57.3	6,712,438	57.9	△645,926	△9.6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5,520,809	52.2	6,104,107	52.7	△583,298	△9.6
	보 통 교 부 금	5,251,974	49.6	5,787,747	50.0	△535,773	△9.3
	특 별 교 부 금	106,518	1.0	139,650	1.2	△33,132	△23.7
	증 액 교 부 금	162,317	1.5	176,710	1.5	△14,393	△8.1
	국 고 보 조 금	23,328	0.2	33,253	0.3	△9,925	△29.8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522,375	4.9	575,078	5.0	△52,703	△9.2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4,058,767	38.4	4,406,102	38.0	△347,335	△7.9
	법 정 전 입 금	4,009,846	37.9	4,156,494	35.9	△146,648	△3.5
	지 방 세 수 입	3,886,460	36.7	4,020,202	34.7	△133,742	△3.3
	학 교 용 지 부 담 금	1,995	0.0	7,386	0.1	△5,391	△7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96,595	0.9	104,168	0.9	△7,573	△7.3
	교육급여보조금	9,653	0.1	8,171	0.1	1,482	18.1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15,143	0.1	16,567	0.1	△1,424	△8.6
	비 법 정 전 입 금	48,921	0.5	249,608	2.2	△200,687	△80.4
	기 타 이 전 수 입	8,732	0.1	16,684	0.1	△7,952	△47.7
	기 타 지 원 금	8,732	0.1	16,684	0.1	△7,952	△47.7
자	체 수 입	112,012	1.1	122,099	1.1	△10,087	△8.3
	교 수 학 습 활 동 수 입	1,464	0.0	1,276	0.0	188	14.7
	행 정 활 동 수 입	4,718	0.0	4,737	0.0	△19	△0.4
	자 산 수 입	7,519	0.1	6,802	0.1	717	10.5
	이 자 수 입	5,607	0.1	7,692	0.1	△2,085	△27.1
	금 융 자 산 회 수	-	0.0	19,191	0.2	△19,191	△100.0
	기 타 수 입	92,704	0.9	82,401	0.7	10,303	12.5
기	타	334,246	3.2	326,309	2.8	7,937	2.4
	전 년 도 이 월 금	324,342	3.1	326,309	2.8	△1,967	△0.6
	금 융 자 산 회 수	9,904	0.1	-	0.0	9,904	순증

(1) 중앙정부이전수입

1)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임
- '22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5조 2,519억 7,400만원으로 통보된 바, 금년도 확정교부액(4조 9,643억 8,500만원) 대비 5.8%, 2,875억 8,9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교육부 재원의 8.9%에 해당하는 규모임

〈표 2-2〉 2022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교육부 재원 규모 (A)	2022년도		2021년도	증감 (D=B-C)	증감률 (E=D/C)
		예정교부액 (B)	구성비 (B/A)	확정교부액 <sup>주1)</sup> (C)		
보통교부금	59,112,325	5,251,974	8.9	4,964,385	287,589	5.8

※ 주1)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2021년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7,389억 5,900만원)은 제외

- '22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은 10조 1,313억 7,7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6.7%, 1조 4,500억 400만원 증가한 것이며, 기준재정수입액은 4조 8,804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1.3%, 1조 1,634억 1,5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2-3〉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증 감 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 ① - ② + ③ )	5,251,974	4,964,385	287,589	5.8
기준재정수요액 ①	10,131,377	8,681,373	1,450,004	16.7
기준재정수입액 ②	4,880,403	3,716,988	1,163,415	31.3
정정교부액 ③	1,000	-	1,000	순증

○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금년도(8조 6,813억 7,300만원) 대비 16.7%, 1조 4,500억 400만원 증가한 10조 1,313억 7,700만원으로 산정된 것임

〈표 2-4〉 2022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세부 산정현황

(단위 : 백만원, %)

측정항목	2022년도 예정교부액	2021년도 확정교부액	증 감	증감률	산 정 내 용
합 계	10,131,377	8,681,373	1,450,004	16.7	
교직원인건비	6,623,121	6,363,796	259,325	4.1	· 호봉승급분(1.83%) 반영 · 직전 2개년 처우개선율('20년도: 2.8%, '21년도: 0.9%) 적용
학교운영비	1,820,263	1,208,677	611,586	50.6	· 대규모학급·학생당 단위비용 1.2배 산정 · 교과교실사업비 및 추가운영비 (593억 9,200만원)반영
교육행정비	128,185	103,344	24,841	24.0	· 학생 수 및 교직원수 변동 · '22년도 제8회 지방선거 준비 등 사무경비(302억 5,200만원) 반영
교육복지지원비	211,084	236,865	△25,781	△10.9	· 지역간·계층간 균형교육비 산정액 △257억원 감소
교육기관 등 시설비	872,157	549,179	322,978	58.8	·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증액 (3,627억 8,500만원) ·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와 공립 유치원 신·증설비 감액(398억 700만원)

(단위 : 백만원, %)

측정항목	2022년도 예정교부액	2021년도 확정교부액	증 감	증감률	산 정 내 용
유아교육비	79,660	69,073	10,587	15.3	·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447억 3,300만원 ·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349억 2,700만원
방과후학교 사업비	92,381	77,916	14,465	18.6	· 방과후학교지원 133억 7,000만원 · 자유수강권지원 238억 3,300만원 · 초등돌봄교실 지원(시설비 포함) 551억 7,800만원 등
고교무상교육 지원비	175,890		175,890	순증	· 입학금·수업료 1,309억 4,600만원 · 학교운영지원비 362억 1,700만원 · 교과서대금 87억 2,700만원
재정결함 보조	87,357	68,530	18,827	27.5	· 지방채 상환 573억 8,200만원 · BTL 임대료 지급 관련 민자사업 지급금 296억 7,500만원
자체노력 수요	41,278	3,993	37,285	933.8	· 학교시설 민관협력 확대 366억 9,400만원 반영('21년 대비 358 억원 증가) ·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유치' 항목 산정분 35억 8,400만원 반영

○ 기준재정수입액은 금년도(3조 7,170억원) 대비 31.3%, 1조 1,634억 1,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에 따라 4조 8,804억 400만원으로 산정된 바,

-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 결산액에 최근 3년('18~'20년)간의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산정액이 증가(35.8%, 1조 2,132억 8,100만원)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확인됨

○ 보통교부금 중 정정교부액은 교육부에 '21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결과 통합학교 운영 인센티브 감액(10억원) 제외 요청이 수용되어 '22년도 보통교부금에 10억원이 산정된 것으로 확인됨

〈표 2-5〉 2022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측 정 항 목	2022년도 예정교부액	2021년도 확정교부액	증 감	증 감 륜
보 통 교 부 금 ( ㉠ - ㉡ + ㉢ )	5,251,973	4,964,385	287,588	5.8
기 준 재 정 수 요 ㉠	10,131,377	8,681,373	1,450,004	16.7
교 직 원 인 건 비	6,623,121	6,363,796	259,325	4.1
학 교 교 육 과 정 운 영 비	1,820,263	1,208,677	611,586	50.6
교 육 행 정 비	128,185	103,344	24,841	24.0
교 육 복 지 지 원 비	211,084	236,865	△25,781	△10.9
교 육 기 관 등 시 설 비	872,157	549,179	322,978	58.8
유 아 교 육 비	79,660	69,073	10,587	15.3
방 과 후 학 교 사 업 비	92,381	77,916	14,465	18.6
고 교 무 상 교 육 지 원	175,890	-	175,890	순증
재 정 결 함 보 전	87,357	68,530	18,827	27.5
자 체 노 력 수 요	41,278	3,993	37,285	933.8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이전 지원	-	△1,000	1,000	100.0
학교 신설 민관협력 확대	36,694	893	35,801	4009.1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3,584	4,100	△516	△12.6
재정집행효율화지원(상반기예산집행비율)	1,000	-	1,000	순증
기 준 재 정 수 입 ㉡	4,880,404	3,716,988	1,163,416	31.3
법 정 전 입 금	4,603,143	3,389,862	1,213,281	35.8
지 방 교 육 세	2,210,953	1,636,597	574,356	35.1
시 도 세	2,122,431	1,546,093	576,338	37.3
담 배 소 비 세	238,042	162,966	75,076	4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분(정산분)	△4,775	8,340	△13,115	△157.3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분	36,180	35,867	313	0.9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분(21년장정교부)	313	0	313	순증
고 교 무 상 교 육 증 액 교 부 금	162,317	0	162,317	순증
고 교 무 상 교 육 전 입 금	13,573	0	13,573	순증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보 전 금	101,370	95,828	5,542	5.8
수 업 료 및 입 학 금 수 입	0	231,298	△231,298	△100.0
정 정 교 부 액 ㉢	1,000	0	1,000	순증

※ 자료근거 : ①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149 ('21.10. 8),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통지"  
 ②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303 ('21. 2.24), "2021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

## 2) 특별교부금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라 ①국가지책사업, ② 지역교육현안, ③재해대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재원인 바,
- 사전 통보된 159개 국가지책사업에 대한 1,065억 1,8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임

〈표 2-6〉 2022년도 특별교부금 예정교부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2 년 도 예 산 안	2 0 2 1 년 도 추 경 예 산	증 감	증 감 륜
특별교부금	106,518	139,650	△33,132	△23.7

- 특별교부금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이후 본예산 편성액과 실교부액 차이로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차액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사사례가 매년도 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 3) 증액교부금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외에 국가가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22년도에는 1,623억 1,700만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 교부되어 세입예산에 편성 요청된 것임
- 세입예산에 편성 요청된 증액교부금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48.0%가 교부되는 것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액중 나머지 47.5% 1,598억

4,100만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4.5%, 151억 4,300만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7〉 2022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현황

(단위 : 백만원, %)

부담주체	부담액	부담률	비고
합계	337,301	100.0	
국가	162,317	48.0	증액교부금
교육청	159,841	47.5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등 지원
자치단체	15,143	4.5	서울시 50%, 자치구 50% 부담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8045 ('21.9.30), “2022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액 알림”

○ 다만,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은 '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5년 한시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을 미리 협의하고 안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 '22년도 세입예산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5,223억 7,5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유아 수 감소(△1만 4,670명)에 따라 금년도 추경예산 대비 △9.2%, △527억 200만원 감소된 규모로 확인됨

〈표 2-8〉 2022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예정교부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률
합	계	522,375	575,077	△52,702	△9.2
	유 치 원	201,874	218,845	△16,971	△7.8
	어 린 이 집 <sup>주1)</sup>	320,501	356,232	△35,731	△10.0

※ 주1)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1억 4,700만원이 포함됨

- 동 전입금의 경우, 중앙정부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하여 한시적('22년 12월 31일까지)으로 지원하는 것이나 서울시교육청의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는 '22년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5) 국고보조금

- '22년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은 233억 2,8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29.8%, △99억 2,500만원 감액된 것임

〈표 2-9〉 2022년도 「국고보조금」 예정교부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률
국 고 보 조 금		23,328	33,253	△9,925	△29.8

- 향후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시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한 성립전예산제도를 통해 세입예산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0〉 2022년도 「국고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서	사 업 명	예 산 액	편 성 근 거
합	계	23,327	
참여협력담당관	교육급여	14,479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3365('21. 8.31)
참여협력담당관	저소득층학습특별지원	1,232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3241('21. 8.25)
초 등 교 육 과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300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3328('21. 9.30)
중 등 교 육 과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	1,728	교육부 교과서정책과-3661('21. 9. 3)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전국소년체육대회	36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3857('21. 9.14)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초등스포츠강사지원	2,116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흡연예방교육	3,108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3483('21. 9. 7)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22년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 587억 6,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담배소비세, 학교용지부담금, 조례상전출금 등에 대한 편성안을 통보 받아 이를 반영한 것임

〈표 2-11〉 2022년도 「자치단체이전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률
합	계	4,058,767	4,406,102	△347,335	△7.9
법 정 이 전 수 입		4,009,846	4,156,494	△146,648	△3.5
	지 방 세 수 입	3,886,460	4,020,202	△133,742	△3.3
	지 방 교 육 세	1,966,277	1,968,541	△2,264	△0.1
	담 배 소 비 세	257,189	279,450	△22,261	△8.0
	시 · 도 세	1,662,994	1,772,211	△109,217	△6.2
	학 교 용 지 부 담 금	1,995	7,386	△5,391	△73.0
	지 방 교 육 재 정 금 교 부 금 보 전 금	96,595	104,168	△7,573	△7.3
	교 육 급 여 보 조 금	9,653	8,171	1,482	18.1
	무 상 교 육 경 비 전 입 금	15,143	16,567	△1,424	△8.6
비 법 정 이 전 수 입		48,921	249,608	△200,687	△80.4
	서 울 시	40,345	165,012	△124,667	△75.6
	자 치 구	8,576	84,596	△76,020	△89.9

##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은 ①지방세수입, ②학교용지부담금, ③교육급여보조금, ④무상교육경비전입금, ⑤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등으로 '22년도에는 4조 98억 4,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12〉 2022년도 자치단체 「법정전입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부담주체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합 계			4,009,846	4,156,494	△146,648	△3.5
서울시	지방세수입	지방교육세	1,966,277	1,968,541	△2,264	△0.1
		담배소비세	257,189	279,450	△22,261	△8.0
		시·도세	1,626,814	1,736,031	△109,217	△6.3
	학교용지부담금		1,995	7,386	△5,391	△73.0
	교육급여보조금		9,653	8,171	1,482	18.1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5,143	16,567	△1,424	△8.6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정산분포함)		96,595	104,168	△7,573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sup>주1)</sup>		36,180	36,180	-	-	

※ 주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은 시·도세전입금 세입과목에 포함하여 편성됨

- **지방세 수입**은 3조 8,864억 6,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금년도 추경예산보다 △3.3%, 1,337억 4,2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이나

- 이는 금년도 7월,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서울시가 법정전입금 정산분

5,968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전출한 것으로 지방세수입을 금년도 본예산(3조 4,233억 9,200만원)과 비교할 경우, 13.5%, 4,630억 6,8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임

〈표 2-13〉 2022년도 시·도세 전입금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본예산안(B)	증 감 (C=A-B)	증 감 률	2021년도 추경예산(D)	증 감 (E=A-D)	증 감 률
합 계		3,886,460	3,423,392	463,068	13.5	4,020,202	△133,742	△3.3
지방세 수 입	지방교육세	1,966,277	1,730,527	235,750	13.6	1,968,541	△2,264	△0.1
	담배소비세	257,189	261,068	△3,879	△1.5	279,450	△22,261	△8.0
	시·도세	1,662,994	1,431,797	231,197	16.1	1,772,211	△109,217	△6.2

※ 자료근거 :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p.4 재구성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소요경비중 시·도의 부담분으로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의 50%에 해당하는 19억 9,5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임

〈표 2-14〉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입 과 목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률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995	7,386	△5,391	△73.0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동법 제5조의4에 따라 설치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계상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도 지난 ’20년도부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부담금 전액을 전출하고 있으나
  - 서울시로부터 전입받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에는 적정 세입과목이 없어 서울시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전출금’을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으로 세입처리하고 있는 바,
  - 이미 지난 ’21년도 예산 심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개선해 줄 것을 구두요청한 바 있으나 ’22년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부적정 전입·전출과목 편성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향후 적정한 전입·전출이 이루어지도록 서면을 통해 개선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지방소비세 확대분(부가가치세 6%)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산출된 안분액과 정산분 965억 9,500만원을 반영한 것임
  - **교육급여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보장비용중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분 96억 5,300만원을 반영한 것임
  - **무상교육경비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151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각각 75억 7,100만원이 전입되는 것임
  - 아울러 ’21년도에 한시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이양사무지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시·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하였으나 ’22년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시·도로 지원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지원분 4,300만원을 서울시가 평생교육국 소관사업에 편성하여 법정전출할 것으로 확인됨

##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489억 2,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서울시 전입금(403억 4,500만원)과 자치구 전입금(85억 7,600만원)이 전입될 것으로 예상됨
- 금년도 추경예산의 경우,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한 성립전예산제도를 통해 비법정이전수입이 2,078억 3,200만원 편성된 바,
  - 향후 '22회계연도중 비법정이전수입의 추가 교부시 세입예산의 유동성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됨

〈표 2-15〉 2022년도 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륜	비 고
합 계	48,921	249,608	△200,686	△80.4	
서울시 전입금	40,345	165,012	△124,667	△7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운영비지원 : 23억원</li> <li>• 조례상 전출금 : 380억 4,500만원</li> </ul>
자치구 전입금	8,576	84,596	△76,019	△8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준비금 지원(총금액의 20%) : 85억 7,600만원</li> </ul>

- 서울시전입금은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비 23억원과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조례상 전출금(교육경비보조금) 380억 4,500만원을 반영한 것임
  -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전년 대비 △30.3%, △10억원 감액된 23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서관 이용 수요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0.3%, △10억원 감액된 23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조례상 전출금(비법정전출금)의 경우, 서울시는 ①일반교육경비보조 17개 사업, 297억 600만원, ②특별교육경비보조 51억 9,800만원, ③중·고교 입학준비금 128억 6,400만원, ④초등학교 입학준비금 42억 1,600만원, 총 519억 8,400만원을 '22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15개 사업, 380억 4,5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바,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조례상 전출금으로 편성한 예산중 ①유치원 아이놀이터 조성(20억), ②예체능 및 디지털분야 협력강사 및 멘토링 지원(10억원), ③학교체육관 건립(24억원), ④초등학교 입학준비금(42억 1,600만원), ⑤특별교육경비보조(51억 9,800만원), 총 148억원을 '22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대상학교 선정 및 서울시와의 협의 완료 후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한 성립전예산제도를 통해 편성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판단됨

〈표 2-16〉 2022년도 「조례상 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부 서	사 업 명	예산액	지 원 대 상
합 계 (총 15개 사업)			38,045	
1	참여협력담당관	마을결합형 학교공간 시설개선 지원	2,000	4개교
2	참여협력담당관	마을결합형 학교 지원	1,000	초중고 77개교
3	참여협력담당관	중·고 입학준비금	12,864	중·고 신입생 14만 2,000명
4	초등교육과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1,346	공립초 8개교
5	중등교육과	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420	유·초·중 2,600명
6	평생교육과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700	도서관·평생학습관 22개관
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 CCTV 교체 지원	1,535	특수·유·초·중고 200개교
8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600	특성화고 80개교
9	체육건강문화예술과	뮤지컬, 음악 등 문화예술 특별교실 구축	1,080	공립초 18개교
10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급식 노후조리기구 현대화 사업	5,000	특수·유·초·중고 80개교
11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독서진흥 캠페인	500	초·중 60개교
12	학교지원과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660	1개원
13	교육재정과	학교시설물 개방우수학교 시설보수비 지원	2,100	특수·유·초·중고 500개교
14	교육시설안전과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7,300	특수·유·초·중고 24개교
15	교육연구정보원	미래형 교실 구축	940	초·중고 20개교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8499 (21.11.12), 「4-5.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사업 현황」

○ 다만, 조례상전출금과 관련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최종 예산편성액은 보통세의 0.32%로 계상된 바,

- 조례 규정상 0.28%(456억원 2,400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추가될 여지가 있으나 지난 '20년 12월,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이후 '21년 1월, 서울시가 재의 요구 한 바 있어 관련 현안의 추이에 따라 세수 증가요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표 2-17〉 최근 5년간 「조례상 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편성기준액 <sup>주1)</sup> (A)	서울시 전출금 통보액 <sup>주2)</sup>		최종편성액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2022	16,268,141	51,984	0.32	-	-
2021	14,489,874	47,376	0.33	54,376	0.38
2020	14,496,136	53,300	0.37	67,299	0.46
2019	13,244,792	53,300	0.40	53,300	0.40
2018	12,818,928	51,025	0.40	28,268	0.22

※ 주1)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 총액

주2) 서울시의 조례상전출금 세출예산 편성액 기준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8499 ('21.11.12), 「4-6. 최근 5개년 조례상전출금 편성현황」

- 자치구전입금은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에 대한 25개 자치구 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총사업비의 20%, 85억 7,600만원을 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임

(3)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기부금, 전입금으로 87억 3,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18〉 2022년도 「기타이전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합계	8,732	16,684	△7,952	△47.7
기타지원금	7,976	9,636	△1,660	△17.2
기부금	720	2,770	△2,050	△74.0
전입금	36	4,278	△4,242	△99.2

- **기타 지원금**은 ①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지원금 54억 8,700만원, ②농협금고 협력사업비 24억 5,900만원, ③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3,000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 **기부금**은 KB금융그룹으로부터 국·공립유치원 신설 지원을 위한 기부금 7억 2,000만원이 반영된 것이고,
- **전입금**은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류·협력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지원금 3,6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4)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1,120억 1,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19〉 2022년도 「자체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률
합	계	112,012	122,099	△	10,087	△	8.3	
	교수학습활동수입	1,464	1,276		188		14.7	
	행정활동수입	4,718	4,737	△	19		0.4	
	자산수입	7,519	6,802		717		10.5	
	이자수입	5,607	7,692	△	2,085		27.1	
	기타수입	92,704	82,401		10,303		12.5	
	금융자산회수	-	19,191	△	19,191		100.0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p.6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문화강좌교실 수입 등을 반영하여 14억 6,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며,
- **행정활동수입**은 각종 체육시설 및 도서관·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설비이용료 등의 수입을 반영하여 47억 1,8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이고,
- **자산수입**은 토지매각 처분예정액 등을 반영하여 75억 1,9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 **기타수입**은 제재금수입, 기타수입등, 지난연도수입 등을 반영하여 927억 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기타수입중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은 '21년 8월, 교육부의 세입예산 과목기준 변경에 따라 신설된 항목으로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금 885억 6,1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은 세입재원의 추가적인 확대가 아닌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간 정산을 위한 반납액임에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체수입(기타수입)이 확대되는 착시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교육부에 개선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0〉 2022년도 「기타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률	비 고
합 계	92,704	82,401	10,303	12.5	
제 재 금 수입	680	767	△87	△11.3	
기 타 수 입 등	91,565	81,064	10,500	12.9	
생산물매각대	2	2	-	-	
그 외 수 입	3,002	81,063	△78,061	△96.3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88,561	-	88,561	순증	• '22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신설
지난연도수입	459	569	△110	△19.3	

※ 자료근거

- ①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1」 p.45~p.52
- ②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8499 ('21.11.12), 「6-2. '기타수입' 세입과목중 '그외수입' 산출근거」

## (5) 기타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 금융자산회수로 3,342억 4,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21〉 2022년도 기타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륜
합	계	334,246	326,309	7,937	2.4
	전 년 도 이 월 금	324,342	326,309	△1,967	△0.6
	금 용 자 산 회 수	9,904	-	9,904	순증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p.7

-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은 '21년도 징수전망액과 지출추정액을 근거로 산출된 순세계잉여금(3,918억 400만원)중 82.8%, 3,243억 4,2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표 2-22〉 회계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순 세 계 잉 여 금		다 음 연 도 반 영 액			
	금 액 ①	전 년 대 비 증 감 륜	본 예 산		추 가 경 정 예 산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2021	391,804	65,495 20.1	324,342	82.8	-	-
2020	326,309	△54,834 △14.4	280,604	86.0	45,705	14.0
2019	381,142	△388,720 △50.5	532,349	139.7	△142,207	△37.3
2018	769,862	254,674 49.4	671,796	87.3	98,065	12.7

※ 주1) 2018~2020회계연도는 결산확정액, 2021회계연도는 결산전망액('21.10.20) 기준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24775 ('21.11.12), “7-3. 회계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예산반영 현황”

〈표 2-23〉 2021회계연도 결산 전망(추정)액

<'21.10.20 기준>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A)	세입결산액(B) (수납률)	세출결산액(C) (집행률)	잉여금차인잔액						
			(B-C)	기 존 채무상환	명 시 이 월 액	사 고 이 월 액	계 속 비	보 조 금 집 행 잔 액	순 세 계 잉 여 금
11,966,810	12,026,362 (100.5%)	11,445,327 (95.6%)	581,035	-	28,542	160,689	-	-	391,804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24775 ('21.11.12), 「7-2. 2021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전망액」

○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되며 긴급재정수요가 발생되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으나,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당해 연도('21년도) 세입·세출결산 이전임에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다음연도('22년도) 세입에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그러나 「지방회계법시행령」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21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출납사무가 완료되는 '22년 2월 10일 이후가 되어야 '21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 전망분을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과목인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재원의 한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여도 법령의 입법취지와는 다른 적용 사례일 수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관행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금융자산회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회수액이 대여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잉여금 회수 등으로 99억 400만원을 편성함

- 금융자산회수는 '21년도에는 '**자체수입**'에 편성되었으나 '21년 8월, 교육부의 훈령 개정으로 '**기타**' 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 4.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 (1) 주요 법정사항 검토

#### 1)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22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22년도 성인지 예산은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와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및 양성평등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바,
  
- 총 36개 사업, 1,663억 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21년도 성인지 예산편성 규모(총 33개 사업, 1,493억 9,700만원) 대비 3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액은 11.3%, 169억 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표 2-24〉 성인지 예산 편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수			예산규모			
		2022년도 ①	2021년도 ②	증감 ①-②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	증감률
합계		36	33	3	166,302	149,397	16,905	11.3
필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2	12	-	70,485	62,999	7,486	11.9
	성별영향 평가사업	4	-	4	2,137	-	2,137	순증
	교육부 지정사업	17	18	△1	90,930	85,115	5,815	6.8
선택	자체선정사업	3	3	-	2,750	1,283	1,467	114.4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 p.8

○ '22년도 성인지 예산의 사업분류별 편성현황을 검토하면, '21년도 33개 사업 중 1개 사업이 폐지되고, 4개 사업이 추가된 것으로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의 경우, 금년도 사업수와 동일하며 '영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신장' 사업이 '영재교육연수'로 사업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됨
- **성별영향평가사업**의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으로 4개 사업('교육공무직노무관리', '인공지능기반융합교육', '인권교육활성화', '학부모지원센터')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 성차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이 '21년도 성인지예산서에는 대상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22년도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4개 사업이 신규 반영되어 기존 미반영 사례를 개선한 것으로 사료됨
- **교육부지정사업**의 경우, '중등스포츠강사지원' 사업비가 학교기본운영비로 이관됨에 따라 △1개 사업이 감소된 것이며

- **자체선정사업**의 경우, ‘오디세이학교운영’, ‘주민참여예산운영’, ‘스쿨미투예방 및 학교회복지원’, 총 3개 자체선정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은 교원연수지원 등 총 22개 세부사업인 바,
  - 서울시교육청은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에 **교육부지정사업**중 교육청의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과 중복되는 9개 세부사업을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에 포함시켜 편성함으로써 **교육부지정사업**을 누락없이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 2)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난 '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는 바,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교육청의 비전, 전략 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제출 시 첨부한 것임
- 서울시교육청은 '22년도에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교육 구현’이라는 임무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총 5개의 전략목표, 15개의 성과목표, 79개의 단위과제 및 8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제출하였음
- '22년도 성과계획중 단위과제는 금년도에 비해 13개가 감소한 바,
  - 교육부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22년도 세부사업중 28개 세부사업이 통·폐합(148개→120개)되었으며 교육부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성과계획서의 단위과제는 세부사업과 1:1 또는 1:N이 되도록 설정하도록 하여 단위과제 수가 금년도보다 △13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2-25〉 2022년도 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2 0 2 2 년 도	2 0 2 1 년 도	증 감
성과계획	전략목표 수	5	5	-
	성과목표 수	15	15	-
	성과지표 수	88	89	△1
	단위과제 수	79	92	△13
예산액	총예산액(㉠)	10,580,269	9,741,994	838,275
	단위과제예산(㉡)	2,829,830	2,385,376	444,454
	설정비율(㉡/㉠)	26.7	24.5	2.2

○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액은 2조 8,298억 3,000만원으로 '21년도(2조 3,853억 7,600만원)보다 4,444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예산액은 7조 7,504억 3,900만원으로 '21년도(7조 3,566억 1,800만원) 보다 3,938억 2,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2-26〉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	증 감	재원비중
총 계	( A + B )	10,580,269	9,741,994	838,275	100.0
성과관리 대상사업	소 계 ( A )	2,829,830	2,385,376	444,454	26.7
	전략목표 I	377,054	278,949	98,104	3.5
	전략목표 II	973,616	951,184	22,432	9.2
	전략목표 III	40,837	36,717	4,120	0.4
	전략목표 IV	1,247,249	938,809	308,440	11.8
	전략목표 V	191,074	179,717	11,357	1.8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소 계 ( B )	7,750,439	7,356,618	393,821	73.3
	인력운영비	6,586,377	6,325,712	260,665	62.2
	기본운영경비	971,459	890,907	80,552	9.2
	지방채상환	52	15,605	△15,553	0.0
	BTL사업비	102,393	101,926	467	1.0
	예비비 등	90,158	22,468	67,690	0.9

※ 자료근거 :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p.7

- 교육부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며,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2년도 성과지표는 총 88개로 모두 정량지표로 설정된 바, 투입·과정지표보다는 산출·결과지표 중심으로 지표가 구성된 것으로 사료됨

〈표 2-27〉 2022년도 성과지표 설정 및 분류 현황

(단위 : 개, %)

성과목표수	성과지표수 (A)	측정여부별 분류		성격별 분류			
		정량	정성	투입	과정	산출	결과
15	88	88	-	3	6	36	43
	(100.0)	(100.0)	-	(3.4)	(6.8)	(40.9)	(48.9)

※ ( )은 성과지표수(A)에 대한 구성비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등은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부적정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나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검토하면,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설정한 지표가 확인되기에

-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성과계획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이 담보된 성과계획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8〉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미흡 주요사례

(단위 : 건, 명, %)

성 과 지 표	연도별 실적 및 목표치						검토내용
	구분	'20	'21	'22	'23	'24	
자 유 학 년 제 연 수 실 적	목적	130	96	100	100	100	2 개 연 도 이 상 목 표 치 동 일
	실적	-	96	-	-	-	
초3~6학년 창의공감 교육 과정 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 운영 비율	목적	30	50	66	70	-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44	76	-	-	-	
목적사업 학교자율 운영 제 참여율	목적	95	95	95	95	95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 2 개 연 도 이 상 목 표 치 동 일
	실적	95	95	-	-	-	
예술중점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목적	4.0	4.5	4.5	4.5	4.5	2 개 연 도 이 상 목 표 치 동 일
	실적	4.64	4.39	-	-	-	
불법사교육및공교 육저해요인에대한 담당공무원지도· 감독 실시 건수	목적	680	685	690	695	700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1,615	925	-	-	-	
학급당 적정학생수	목적	24	23.5	23	22.5	22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22.93	22.83	-	-	-	
다문화학생 한국어 교육 지원률	목적	35	80	83	86	88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85	87	-	-	-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반영률	목적	70	70	70	70	70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 2 개 연 도 이 상 목 표 치 동 일
	실적	75	70	-	-	-	
학부모교육 만족도	목적	91	91.5	92	92.5	93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97.8	93	-	-	-	
언 론 기 사 의 광고가치 증가율	목적	신규	100.5	100.5	100.5	100.5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 2 개 연 도 이 상 목 표 치 동 일
	실적	-	101.4	-	-	-	
행 정 서 비 스 현장운영 만족도	목적	49	53	60	61	62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63	63	-	-	-	
교직원및학부모 나 이 스 만 족 도	목적	93.5	93.7	93.9	94.0	94.0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94.5	94.7	-	-	-	
노 사 관 계 직무연수 이수율	목적	97	97	93	93	93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 2 개 연 도 이 상 목 표 치 동 일
	실적	97	95.2	-	-	-	

### 3)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 서울시교육청은 '21년도 세출예산중 연도말 예산교부,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133건, 585억 3,9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명시이월액 규모는 전년도 대비 △8.9%, △56억 8,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2-29〉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예 산 액 <sup>주1)</sup>	명 시 이 월			전 년 대 비	
		건 수	금 액	비 율	증 감	증 감 률
2 0 2 1	11,583,632	133	58,539	0.51	△5,685	△8.9
2 0 2 0	10,768,439	129	64,224	0.59	△121,310	△65.4
2 0 1 9	11,194,696	308	185,534	1.66	1,936	1.0

※ 주1) 2019~2020년도는 최종예산, 2021년도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 명시이월 요청사업중 에코스쿨 조성을 포함한 53건, 236억 800만원은 민원발생, 설계 변경 등 **사업추진 시 장애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2-30〉 사업추진 시 장애발생에 따른 명시이월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25,906	23,608	
1	대 방 초 모듈러클래스 시설비	4,469	4,469	모듈러교실 설치 재검토에 따른 연도내 집행 불가능
2	그 린 스 마 트 스 쿨 ( 사 전 기 획 용 역 )	2,760	2,476	그린스마트스쿨사업 민원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3	정 신 여 고 체 육 관 증 개 축 ( 특 별 교 부 금 )	1,800	1,800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진행에 따른 일정 연기로 연도내 집행 불가능
4	안 전 관 리 ( 내 진 보 강 사 업 )	2,065	1,704	.가양초 및 탑산초 학교 공사시기 조정 요청 .양원초 내진설계비 연도내 집행불가 .송정중 실시설계지연
5	매 동 초 내 진 보 강 공 사	1,545	1,545	올해 학사일정 등으로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며 학교에서 내년 학사일정 조정하여 여름방학에 공사추진 예정
6	상암중 급식시설증축 및 재 배치 사 업 ( 특 별 교 부 금 )	891	840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공유재산심의) 이행으로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7	개 원 2 초 학 교 신 설 건 설 비	700	700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완료 후 설계공모 예정으로 2022년 설계 및 공사 예정
8	에 코 스 쿨 조 성 ( 국 고 보 조 금 )	1,245	663	공동타당성조사 등 추진일정 변경으로 연도내 설계비 및 시설비 집행 불가능
9	개 원 2 초 학 교 신 설 설 계 비	600	582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완료 후 설계공모 예정으로 2022년 설계 완료 예정
10	이 수 초 강당겸체육관 시설비	548	548	설계변경 추진함에 따라 추가 설계기간 필요하여 연내 공사 집행 불가
11	한 성 여 고 외 벽 개 선	501	501	.2021년10월부터 착공(터파기, 발파 등)이 예정된 삼선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부지와 한성여고 본관 건물 후면이 초밀접하고 있어, .2021년하반기공사시신설외벽마감재의탈락과파손등 우려되어공사시기조정필요

※ 5억원 이상 사업내역만 표기(합계는 해당 사유 전체 이월 규모임)

○ 명시이월 요청사업중 50건, 246억 9,600만원은 지난 9월 2일 확정된 제 2회 추가경정예산 및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하여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연도말 예산교부**를 사유로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2-31〉 연도말 예산교부에 따른 명시이월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24,862	24,696				
1	월	촌	초	1,460	1,412	2021. 9. 17. 추경2차 교부되어 설계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			
	드	라이	해						
	비	트	소						
2	동	도	중	1,285	1,285	2021.10.27. 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현안수요)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특	별	증						
	교	실	축						
3	구	남	초	1,104	1,104	2021.10.27. 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현안수요)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외	부	개						
	창	호	선						
4	미	래	초	1,027	1,027	2021.10.27. 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현안수요)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본	관	개						
	동	화	선						
	장	실							
5	영	란	중	997	997	2021.10.27. 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현안수요)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운	동	보						
	장	및	수						
	기	타							
	보	수							
6	송	실	고	937	937	2021.10.27. 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현안수요)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본	관	개						
	동	외	선						
	벽	개							
	선								
7	세	곡	초	932	932	2021.10.27. 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현안수요)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본	,	개						
	신	관	선						
	동	외							
	벽	개							
	선								
8	하	계	중	872	872	2021.10.27. 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현안수요)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교	사	개						
	동	외	선						
	벽	개							
	선								
9	고	산	초	858	858	2021.10.27. 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현안수요)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본	관	개						
	동	화	선						
	장	실							
	개	선							
10	송	정	중	756	756	2021.10.27. 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현안수요)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교	사	개						
	동	바	선						
	닥	개							
	선								
11	송	곡	고	781	755	2021. 9. 17. 추경2차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			
	본	관	개						
	동	화	선						
	장	실							
	개	선							
12	목	운	초	761	727	2021. 9. 17. 추경2차 교부되어 설계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			
	급	식	개						
	환	경	선						
	개	선							
13	명	덕	고	656	656	2021.10.27. 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현안수요)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본	관	개						
	동	바	선						
	닥	개							
	선								
14	묘	곡	초	595	595	2021.10.27. 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현안수요)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후	관	개						
	동	화	선						
	장	실							
	개	선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15	신도림고 본관동 냉난방개선	572	572	2021.10.27. 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현안수요)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16	영서초 냉 난 방 개 선	556	556	2021.10.27. 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현안수요)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17	동부교육지원청 소 방 시 설 개 선	572	546	2021. 9. 17. 추경2차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 (연도내 설계 완료)
18	공덕초 냉 난 방 개 선	517	517	2021.10.27. 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현안수요)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19	진관중 교사동 냉난방개선	501	501	2021.10.27. 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현안수요)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 5억원 이상 사업내역만 표기(합계는 해당 사유 전체 이월 규모임)

○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기타** 내역은  
29건 102억 2,900만원으로 검토됨

〈표 2-32〉 기타 명시이월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12,219	10,229	
1	서울형몽실학교	3,000	2,800	학교선정, 사업타당성 검토 및 설계 시일 소요 로 인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2	정의여고 급식실 샌드위치패널제거	1,300	1,210	인건비 및 단가 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집행 금 액이 부족하여 예산 추가확보 후 집행 예정
3	안전관리 (내진보강사업)	2,027	1,200	설계 진행 중으로 연도 내 공사 추진 불가
4	중앙중 본관동 석면해체제거작업	788	788	공사금액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능, 2022년 부족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예정
5	남산초병설유신설	741	741	중앙투자심사 재심사(10월) 예정으로 공사 계 약 전 사전절차 이행 필요
6	오산고 신사격장 보강토옹벽철거 및재설치	500	500	옹벽 설치 공법 변경과 이로 인한 지질 검사 실시 등 설계기간 장기 소요

※ 5억원 이상 사업내역만 표기(합계는 해당 사유 전체 이월 규모임)

○ 명시이월 요청사업중 **초등과학 생애주기 연수**의 경우, 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900만원을 '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집합 연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잔액 600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요청한 것이나

- 명시이월은 사업추진기간 부족, 사업추진상 장애발생, 사업비 부족 및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써
- 해당 사업비 집행잔액은 '21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추경하거나 연도 말 불용처리하고, '22년도 재원으로 재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적합한 세출예산 운용사례로 판단됨
- 따라서 동 명시이월 요청건은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에 대한 의회의 예산통제권으로서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절차적 취지를 고려할 때 요청한대로 승인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례로 사료되어 해당 내역에 대한 수정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33〉 부적정 명시이월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초등과학	생애주기	연수	9	6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하여 2021년 연내 연수 추진 불가능			

(2) 실·국별 세부사업 검토

1) 기획조정실

□ 예비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21)

- **예비비**(예산담당관)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세출항목임
-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 바,
  - '22년도 예산안에는 일반예비비 60억원(예산총액의 0.06%)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0억원을 계상하여 총 1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34〉 예비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 도		증 감 (A - B)	증 감 륜
			본 예 산	추가경정예산(B)		
합	계	10,000	10,000	11,220	△1,220	△10.9
	일 반 예 비 비	6,000	6,000	7,220	△1,220	△16.9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00	4,000	4,000	-	-

- 다만,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편성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아 코로나19와 같은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예비비 확보수준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해·재난 예비비 편성기준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반환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50)

- **반환금**(예산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등 외부재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519억 8,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2-35〉 반환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금	액	반	납	기	관
합		계		51,989				
기	타	반	환	금			-	
국	고	보	조	금	반	환		-
광	역	자	치	단	체	보	조	금
기	초	자	치	단	체	보	조	금
학	원	과	태	료	반	환		
신	길	중	다	목	적	체	육	관
			협	력	지	원	사	업
			(교	육	경	비	보	조
			금					

※ 자료근거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51

- ①학원과태료 취소처분으로 인한 과태료반환(500만원), ②신길중 다목적 체육관 협력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200만원)을 포함한 2건의 경우, 반납금액과 반납기관이 특정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나,
- 반환금 편성액의 99.9%에 해당하는 519억 8,200만원은 반납금액과 반납기관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회계연도중에 확정될 반환금 규모를 전망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미리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세입예산의 경우, 내년도 본예산 편성재원 부족을 해소하고자 당해연도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중 일부를 내년도 본예산에 미리 세입예산으

로 편성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 세출예산의 경우, 반환금의 규모를 전망하여 일부를 내년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편성사례로 판단됨

□ **공립학교운영비**

- **학교기본운영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56)
- **학교기타운영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60)

○ **공립학교운영비**(예산담당관)는 서울시 관내 1,273개 단위학교 운영을 위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경비인 **학교기본운영비**와 특정 사업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인 **학교기타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표 2-36〉 공립학교운영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 도		증 감 (A - B)	증 감 륜
			본 예 산	추가경정예산(B)		
합	계	671,251	647,371	690,701	△19,450	△2.8
	학 교 기 본 운 영 비	610,990	588,561	633,241	△22,251	△3.5
	학 교 기 타 운 영 비	60,261	58,810	57,460	2,801	4.9

-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급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6,109억 9,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①위드 코로나 상황에 대한 긴급한 교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통경상운영비 10% 증액과 목적사업비에서 학교운영비로 전환 등 통합 교부사업비 증액분 690억 1,900만원, ②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이관함에 따라 △451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 2-37〉 최근 3년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2020년도 최종예산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610,990	633,241	705,982
지 원 학 교 수		1,273	1,251	1,232
평균 학교기본운영비		480	506	573
	증 감 륜	5.0	△11.7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8499, ('21.11.12) 「15-2. 최근 3년간 학교기본 운영비(공립) 편성 현황」

- 학교기타운영비는 과학고내실화지원, 학교평등예산제 등 22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602억 6,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①초등수영교육지원 교육회수 증가에 따라 13억 4,700만원이 증액되고, ②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지무요원인건비 등 9개 사업에 대한 지원학교 증가로 18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③특수학급 학급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5개 사업에 △3억 5,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8〉 2022년도 학교기타운영비 편성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번	사 업 항 목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추경예산(B)	증 감		변 동 사 유
				증감(A-B)	증 감 률	
합	계	60,261	57,461	2,801	4.9	
1	초 등 수 영 교 육 지 원	7,025	5,678	1,347	23.7	교육회수 증가
2	장애학생활동지원사회복무요원인건비	8,535	7,667	868	11.3	지원교 증가
3	일 반 고 교 육 역 량 강 화	17,215	16,715	500	3.0	
4	학 교 평 등 예 산 제	4,900	4,700	200	4.3	
5	진 로 활 동 실 구 축	1,000	880	120	13.6	
6	기 초 학 력 책 임 지 도 제 운 영	3,955	3,934	21	0.5	
7	영 어 교 육 내 실 화 지 원	565	563	2	0.4	
8	학교폭력전담교사수업시수경감지원	163	77	86	111.7	지원단가 및 시간증가
9	혁 신 학 교 운 영 비 지 원	52	44	8	18.2	
10	교 사 수 업 시 수 경 감 강 사 비	9	5	4	80	
11	학 생 참 여 예 산 제	84	90	△6	△6.7	지원교 감소
12	개 방 형 선택 교육 과정 운영	-	17	△17	순감	대상없음
13	서 울 국 제 고 내 실 화 지 원	220	258	△38	△14.7	지원학생수 감소
14	학 생 안 전 체 험 교 육 비	325	462	△137	△29.7	지원단가감소
15	특 수 학 급 운 영 비	10,282	10,440	△158	△1.5	학급수 감소
16	과 학 고 내 실 화 지 원	749	749	-	-	
17	교 과 교 실 제 운 영 비 지 원	9	9	-	-	
18	단 위 학 교 자 유 학 년 제 운 영	42	42	-	-	
19	배 움 터 지 킴 이 운 영	857	857	-	-	
20	실 험 실 습 재 료 비 지 원 확 대	4,111	4,111	-	-	
21	직업계고학생창업동아리운영지원	144	144	-	-	
22	초 등 학 교 교 통 안 전 지 도 활 성 화	19	19	-	-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8499, ('21.11.12) 「15-5. 학교기타운영비 편성 변동 현황」

□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87)

- **계약제근로자인건비**(예산담당관)는 지방공무원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및 고용장려를 지원하기 위한 286억 8,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표 2-39〉 계약제근로자인건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률
합	계	28,687	24,972	3,715	14.9
	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	14,147	11,615	2,531	21.8
	장애인고용의무제 관련운영	14,540	13,356	1,183	8.8

- 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는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이 1개월 이상 결원될 경우, 그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보수, 법정부담금, 퇴직금)를 편성한 것인 바,

- '22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이 인상(230원)되어 그에 따른 증액분 25억 3,1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 장애인고용의무제관련운영은 중·경증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1인당 월140만원을 지원하고자 금년도 대비 11억 8,300만원 증액된 145억 4,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주된 증액 사유는 '21년 9월,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한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이 시행되어 학교 등 소속기관으로 의무고용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내년도 소요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공무원(교원, 전문직, 지방공무원) 인건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92)

- **공무원인건비**(예산담당관)는 교원, 전문직, 지방공무원의 보수, 법정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및 맞춤형복지비로서 '22년도 소요액 4조 4,775억 6,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표 2-40〉 공무원(공무원, 전문직, 지방공무원) 인건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률
총	계	4,477,564	4,308,707	168,857	3.9
	보 수	3,466,195	3,437,066	29,128	0.8
	법 정 부 담 금	819,372	796,722	22,650	2.8
	명 예 퇴 직 수 당	131,520	20,530	110,990	540.6
	맞 춤 형 복 지 비	60,477	54,389	6,088	11.1

- 보수의 경우, ①'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1.4%) 적용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고, ②'22년도 정원 증감분(교원 △454명 감소, 지방공무원 63명 증가, 교육전문직원 15명 증가)을 반영하여 3조 4,661억 9,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며
- 법정부담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보수예산에 비례하는 부담금인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건강보험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22년도 법정부담금 효율인상을 반영하여 22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22년도 공립 교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명예퇴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1,315억 2,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①공립 교원 명예퇴직수당 1,272명분, 1,272억원, ②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0명분, 37억 2,000만원, ③교육전문직원 명예퇴직수당 항목을 신설에 따라 4명분, 6억원 등을 반영하여 1,315억 2,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다음연도 집행예정인 명예퇴직수당을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학교회계로 조기집행하여 다음연도에 학교회계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이라는 예산운영원칙에 위배되는 부적정한 운영 사례로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바,
  
- 세출예산의 과부족편성을 방지하고자 일정규모의 인건비 초과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예산 편성시 정밀한 소요액 추계를 통하여 인건비성 경비의 과부족 편성사례가 관행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건강검진, 난임지원, 태아산모검진 등 자유허목이 추가되어 604억 7,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교육급여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45)

- **교육급여지원**(참여협력담당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86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41〉 교육급여지원 편성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률
합	계	28,630	25,061	3,568	14.2
기타급여	인원수	48,400	49,058	△658	△1.3
	예산액	21,499	18,116	3,383	18.6
입학금 및 수업료	인원수	1,096	1,193	△97	△8.1
	예산액	7,130	6,945	185	2.6

※ 자료근거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46

- **기타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학교급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금(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경비로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가 금년도 대비 초·중·고 평균 21.7% 인상되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보다 3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이며
-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①일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수업료 지원 학생수가 감소(△38명) ②사립학교 수업료 단가 상승(5.5%)에 따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보다 1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청한 것임
- **교육급여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의2조에 따라 소요 재원을 교육청 및 국가·서울시·자치구가 분담하는 사업으로

〈표 2-42〉 2022년도 교육급여지원 재원분담 현황

(단위 : %, 백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입학금·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분담기관 (분담률)	분담액	분담기관 (분담률)	분담액
중위소득 40% 이상, 50% 이하		교육청(100)	4,489	국가(60)	12,900
중위소득 40% 미만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	서울시(28)	737	자치구(12)	2,580
		자치구(12)	316		
	합계		합계	7,121	합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8499, ('21.11.12)

- 국가·서울시·자치구가 각각 60:28:12로 분담하여 교육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국가·서울시·자치구가 부담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교육청이 100% 입학금 및 수업료를 부담하는 바,
- '22년도 편성액(286억 3,000만원)중 교육청 부담분은 44억 8,900만원이며 국가·서울시·자치구가 부담비율(60:28:12)에 따라 241억 3,2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됨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51)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참여협력담당관)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복지·문화·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억 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43〉 2022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륜
합 계	11,007	9,283	1,723	18.5
교육복지학교사업비	6,156	4,276	1,880	43.9
두런두런프로그램 운영	255	255	-	-
서울희망교실운영	4,594	4,751	△156	△3.2

- **교육복지학교사업비**는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등 교육취약학생들에게 교육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1억 5,600만원을 편성한 바,

-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증가된 학생수(9,686명)를 반영하여 금년도 보다 18억 8,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희망교실운영**은 초·중·고에 재학중인 경제·정서·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멘토 교원과 4~8명 내외의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운영 효율화를 통해 인쇄물 및 유인물제작비, 대관료, 행사용품비 등을 감액하여 전년도 보다 △1억 5,600만원이 감소한 45억 9,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혁신교육지구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86)

○ **혁신교육지구운영**(참여협력담당관)은 교육청-서울시-자치구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단계 협약」에 따라 25개 자치구별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마을결합형 학교교육과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5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44〉 혁신교육지구운영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률
혁신교육지구운영		15,562	17,502	△	1,940	△		11.1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13,706	13,168		538			4.1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역량강화	1,782	436		1,346			308.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협의체 운영	73	59		14			23.7
	교육후견인제	-	305	△	305			
	도담도담마을학교	-	533	△	533			
	서울형몽실학교	-	3,000	△	3,000			

※ 자료근거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86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은 관내 학교(1,138교)에 대해 학교회계전출금 113억 8,400만원을 포함한 각 교육지원청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131억 6,800만원) 대비 4.1%, 5억 3,800만원이 증액된 137억 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 역량강화는 '22년도부터 기존 교육후견인제, 도담도담마을학교, 서울형몽실학교 등 기존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총 17억 8,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제출됨

○ 혁신교육지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21년도에는 교육청 125억 : 서울시 125억원 : 자치구 125억원(자치구별 5억원 이상)을 각각 부담하였으나,

- 서울시가 제출한 '22년도 세출예산안에는 혁신교육지구지원 세출예산이 금년도 보다 △60억원 감액된 65억원으로 확인되어 내년도 서울형혁신지구운영의 전체 사업재원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입학준비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06)

- **입학준비금**(참여협력담당관)은 '21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의류 및 도서 등의 구입이 가능한 제로페이 포인트(1인당 30만원)를 지원하고자 430억 4,800만원을 편성한 바,

〈표 2-45〉 2022년도 입학준비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합	계	43,048	42,708		339
	입 학 준 비 금	30,183	30,221		△37
	입 학 준 비 금 (서울시전입금)	12,864	12,487		376

- 입학지원금 지급대상 인원은 금년도 보다 △168명(142,168명→142,000명) 감소하였고, 제로페이 수수료율도 인하(1.1%→0.66%) 되었으나, 입학준비금콜센터 기간제인건비 및 운영비, 홍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교육청은 '22년도부터 입학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①'22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69,800명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140억 5,200만원)를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각각 40:30:30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됨

-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부서가 지난 10월 15일,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 내년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원격교육지원 사업과 입학지원금의 사용항목이 중복되어 보건복지부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입학지원금 사용항목에서 스마트기기를 제외하고 협의요청서를 수정제출하여 '협의완료'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됨
-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과 달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은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22년도 본예산안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세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바
-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1월 23일 발의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요재원이 편성요청될 것으로 사료됨

□ **교육공무원인건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67)

- **교육공무원인건비**(노사협력담당관)는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통합인건비, 맞춤형복지비를 지원하고자 4,997억 6,9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2-46〉 2022년도 교육공무원인건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률
합	계	499,769	416,397	83,372	20.0
	교육공무원 통합인건비	489,490	406,682	82,807	20.3
	맞춤형 복지비	9,516	9,715	△199	△2.0

- **교육공무원 인건비**는 공립교육공무원 29개 직종과 사립공무원 8개 직종을 대상으로 인건비(기본급, 수당, 법정부담금) 및 복리비(맞춤형복지비), 4,997억 6,900만원을 편성한 것인 바,
  - '21년도에 교육공무원 인건비를 최초 통합하여 편성함에 따라 인건비 10개월분('21. 3~12월)을 편성하고, '22년도부터는 12개월분('22. 1~12월)을 편성하여 증액 편성된 착시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 교육정책국

□ **초등돌봄교실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916)

- **초등돌봄교실운영**(초등교육과)은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및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한 긴급돌봄운영비를 지원하고자 331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바,

〈표 2-47〉 초등돌봄교실운영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감액	편 성 내 역
합 계	33,109	31,038	2,071	
초 등 돌 봄 교 실 운 영	33,062	30,998	2,064	· 긴급돌봄운영비(2학기분) 91억 800만원 · 돌봄교실설치비 20억 1,700만원
초등돌봄교실담당자연수	46	39	7	· 초등돌봄교실 갈라잡이 및 연수 운영비

- ①긴급돌봄교실 1실당 운영비로 학기당 2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91억 800만원, ②국정과제에 이행에 따른 돌봄교실 증설(20실) 운영비 6억원 (1실당 3,000만원), ③겸용교실을 전용교실로 전환(24실), 노후시설보수(98교), 학년연구실 구축(11실)에 소요되는 경비 14억 1,7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원격교육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996)

○ **원격교육지원**(중등교육과)은 '21년도부터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원격교육 지원사업으로 552억 7,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48〉 원격교육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감액	편성 내역
합계	55,273	62,707	△7,433	· 원격교육환경 만족도조사(△4억원) 순감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	54,988	62,331	△7,343	· 중1학년 학생 및 교원 스마트기기 지원 - 스마트기기 : 70만원×70,902명 · 디지털튜터자치단체운영비 : 9억 5,200만원 · 조달수수료 5억원 등
원격교육네트워크 구축·운영	285	336	△50	· 11개 교육지원청 운영비 등

※ 자료근거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996

-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은 549억 8,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소요예산중 94.1%, 517억 3,400만원은 '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70,902명을 대상으로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계약추진 및 학교별 배송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2년도 본예산에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22학년도 소요분의 경우,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원격교육지원사업 증액분(600억 8,300만원)을 재원으로 중학교 신입생 및 교원, 88,097명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자 통합계약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월 18일, 공고한 「2022학년도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관련 기기 구매 입찰 공고」에 따르면 태블릿의 내용연수가 5년임에도 하자보수 및 관리기간이 3년에 불과하고

- 학습용이라는 제한적인 목적의 기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운영체제의 최소 요구규격을 지난 '18년도에 출시된 안드로이드 9.0으로 정하고 있으나 통상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2~3단계로 제한되어 있고, '21년도 중 안드로이드 12.0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5년간 기기의 원활한 사용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은 단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 아닌 '22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매년 중학교 신입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인 바, 매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적절한 기기 구매와 함께 향후 내용연수가 남은 기기의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49〉 시·도교육청별 스마트기기 구매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 울	부 산	경 북	총 북
입찰공고일	11월 18일	10월 27일	10월 18일	10월 20일
총사업비	59,335	61,837	26,437	41,908
하자보수(관리)기간	3년	5년		
운영체제 요구규격	안드로이드 9.0 이상	안드로이드 10.0 이상		

※ 자료근거 : ① 각 시·도교육청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②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총사업비에 혁신고(12교)의 구매분 포함

- 또한, 조달수수료율(0.38%)에 따라 산정된 스마트기기 구매계약(517억 3,400만원)의 조달수수료는 1억 9,700만원임에 불과함에도 5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어 실제보다 과다편성된 부분은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학생 및 교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가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 3) 평생진로교육국

□ **다문화탈북학생지원(특별교부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375)

- **다문화탈북학생지원**(민주시민생활교육과)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는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지원사업으로서 '21년도 추가경정예산(17억 5,400만원) 대비 7.1%, 1억 2,600만원 증액한 18억 8,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50〉 2022년도 「다문화탈북학생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률
합	계	1,880	1,754	126	7.1
	다문화학생교육지원	1,222	1,106	116	10.4
	탈북학생교육지원	658	648	10	1.5

-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와 학습멘토링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요하여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다시 계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19년 6월,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어 재동의를 받아야하는 5년 이내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21년 10월, 기존 위탁기간('20.12.11~'21.10.31)이 만료됨에 따라 대상사무의 지속적 위탁을 위하여 새로운 위탁운영기관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21년 11월 현재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  
우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  
의를 갈음하여야 하나 해당 보고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지침」을  
통해 예산 심의 전 의회 동의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사안의 경  
우 '선(先) 예산 확보, 후(後)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절차적 모순이 발생  
될 수밖에 없어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  
안으로 사료됨

□ **단위학교상담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526)

○ **단위학교상담지원**(민주시민 생활교육과)은 11억 3,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2-51〉 2022년도 「단위학교상담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률
합	계	1,138	2,648	△1,510	△57.0
	Wee클래스 구축	1,000	1,000	0	0.0
	Wee클래스 운영	138	1,648	△1,510	△91.6

- '22년도 Wee클래스 운영비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91.6%, △ 15억 1,000만원 감액된 사유는 학교기본운영비 통합교부사업 추진에 따라 '22년도부터 단위학교 Wee클래스 운영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그동안 동 사업내역에 편성되었던 공립학교 980교에 대한 사업비는 '22년도 예산안에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제출된 것으로서 동사업에는 사립 재정결함 미지원교 69개교에 대한 사업비만 계상된 것으로 확인됨

□ 무상급식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783)

- 무상급식(체육건강문화예술과)은 금년도 추경예산(4,861억 100만원) 대비 5.2%, 254억 6,500만원 증액한 5,115억 6,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52〉 2022년도 「무상급식」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륜
합	계	511,566	486,101	25,465	5.2
	(유치원) 식품·관리비	23,588	-	23,588	순증
	(유치원) 인건비	14,919	-	14,919	순증
	식품·관리비	276,507	322,252	△45,744	△14.1
	인건비	189,018	157,117	31,900	20.3
	조리종사원 대체인력인건비	7,532	6,730	801	11.9

- '22년도 무상급식비의 주된 증액요인은, 무상급식 지원일수는 초 192일, 중 173일, 고 173일, 특수 192일로 금년도와 동일하나, 식품비(2.1%)와 관리비(0.9%)에 대한 물가 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5.1%)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급식단가에 반영하여 소요금액이 증액되었고,
  - 공·사립 유치원 원아(71,876명)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재학생(82만 5,122명)을 포함하여 지원대상 학생수가 금년도 대비 7.4%, 6만 2,058명 증가하여 소요예산 편성액도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2-53〉 2022년도 급식지원대상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유	초	중	고	특 수	계
2022년도	71,876	396,182	213,073	211,423	4,444	896,998
2021년도	-	403,610	206,492	220,508	4,330	834,940
증 감	71,876	△7,428	6,581	△9,085	114	62,058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16359 ('21. 9. 9), “2022. 무상급식비 예산편성 계획(안)”

- 유치원 무상급식비의 경우, 790개원의 원아 71,876명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 770억 1,600만원중 교육청 분담비율(50%)에 해당하는 385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4〉 2022년도 유치원 무상급식비 편성기준

(단위 :개원, 명, 일, 백만원)

구 분	유치원수	유 아 수	기준일수	급 식 비 단 가 ( 원 )				소 요 액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합 계	
합 계	790	71,876	-	-	-	-	-	77,016
공 립	296	18,530	182	2,997	159	555	3,711	12,515
사 립	494	53,346	217	2,997	159	2,416	5,572	64,501

- 다만, 급식 기준일수를 공립 182일, 사립 217일로 산정하여 ①식품관리비 (235억 8,800만원)와 ②인건비(149억 1,900만원)를 예산액에 계상하였으나

- 이는 학년도('22년 3월 ~ '23년 2월)를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지난 9월, 사업부서가 회계연도('22년 3월 ~ '22년 12월)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기준일수를 변경하여 공립 178일, 사립 194일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회계연도로 기준일수를 변경함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는 699억 600만원으로 교육청(50%)이 부담하는 경비는 349억 5,300만원인 바, 제출된 예산안은 35억 5,500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사업비의 적정규모를 재산정하여 감액조정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55〉 2022년도 유치원 무상급식비 조정 필요내역

(단위 : 개원, 명, 일, 백만원)

구 분	유 아 수 ( a )	급식단기(원) ( b )	기 준 일 수		소 요 액		
			편성일수 ( c )	적정일수 ( d )	제 출 액 (A= a×b×c)	적 정 액 (B=a×b×d)	차 액 (A - B)
합 계	71,876	-	-	-	77,016	69,906	7,110
공 립	18,530	3,711	182	178	12,515	12,240	275
사 립	53,346	5,572	217	194	64,501	57,666	6,835

- 아울러 서울시 또한 기관별 분담비율에 따라 총 경비 699억 600만원에 대한 서울시(30%) 부담액 209억 7,100만원을 '22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시는 '21년 9월, 서울시교육청의 기준일수 변경 안내에 따라 사업비를 감조정하여 편성하였으나, 기준일수를 변경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한 서울시교육청은 변경된 기준일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과다 편성하여 방치한 결과일 수 밖에 없어 교육재정의 한정성을 공유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사례로 사업부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건실현대화사업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834)

○ 보건실현대화사업(체육건강문화예술과)은 노후 보건실 개선을 위하여 20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56〉 2022년도 「보건실현대화사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륜
합	계	2,005	-	2,005	순증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	2,000	-	2,000	순증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 매 뉴 얼 개 정	5	-	5	순증

- '22년도부터 5년간 총 450개교에 대하여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바,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는 유·초·중·고·특수학교중 희망학교 50교 (공립 30교, 사립 20교)에 각 4,000만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표 2-57〉 보건실 현대화사업 연차별 추진목표

(단위 : 개교,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학 교 수	450	50	100	100	100	100
예 산 액	18,000	2,000	4,000	4,000	4,000	4,000

#### 4) 교육행정국

□ **직속기관신증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895)

- **직속기관신증설**(학교지원과)은 구 공진초 교사동 일부를 활용하여 강서도서관 가양분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3억 6,500만원) 보다 781.9%, 28억 5,400만원 증액된 32억 1,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2-58〉 강서도서관 가양분관 설립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륜
합	계	3,219	365	2,854		781.9
	건설비	3,219	100	3,119		3,119.0
	운영비 <sup>주1)</sup>	-	230	△230		△100.0
	보전금 <sup>주2)</sup>	-	35	△35		△100.0

주1)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주2) 설계공모비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①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②자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20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유재산인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항은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 강서도서관 가양분관 건립사업의 경우, 기존 학교 교사동에 대한 리모델링(2,010m<sup>2</sup>)과 증축(990m<sup>2</sup>)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비 89억 7,700만원이 소요되나,
- 건물 증축을 통해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990m<sup>2</sup>, 13억 8,200만원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기준가격 2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됨

□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913)

○ **운영비재정결함보조**(학교지원과)는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 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9억 7,100 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인 바,

- ①정책정비에 따른 기타운영비 및 목적사업비의 학교기본운영비 편입에 따른 기본운영비 확대지원, ②2022학년도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운영비 지원 등이 주된 증액사유로 검토됨

〈표 2-59〉 2022년도 「운영비재정결함보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률
합	계	210,971	189,481	21,490	11.3
	사립중학교 <sup>주1)</sup>	64,104	57,070	7,034	12.3
	사립고등학교 <sup>주2)</sup>	134,099	120,764	13,335	11.0
	사립특수학교 <sup>주3)</sup>	12,680	11,472	1,207	10.5
	사립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비 <sup>주4)</sup>	87	174	△87	△50.0

※ 주1) 108교, 주2) 171교, 주3) 18교

주4) 서울삼성학교, 한국육영학교(2대), 총 2교, 3대

□ 학교신·증설

- 학교신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956)
- 교실증축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951)

○ 학교신·증설(학교지원과)은 '21년도 추가경정예산(1,395억 1,800만원) 대비 △58.8%, △820억 600만원 감액된 575억 1,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60〉 2022년도 「학교신·증설」 편성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학 교 수	예 산 액	학 교 수	예 산 액	학 교 수	예 산 액	증 감 륜
합 계	34	57,512	62	139,518	△28	△82,006	△58.8
학교신설	19	34,923	37	114,846	△18	△79,923	△69.6
교실증축	15	22,589	25	24,672	△10	△2,083	△8.4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8499 ('21.11.12)

○ 학교신설은 '21년도 추가경정예산(1,148억 4,700만원) 대비 △69.6%, △799억 2,400만원 감소한 349억 2,300만원으로,

- '21년도 추가경정예산(37개교) 보다 신설학교수는 △18개교 감소한 19개교에 대한 학교신설 경비가 반영된 것이며,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따른 공립유치원 13개교 신설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표 2-61〉 2022년도 학교신설 편성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사 유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합 계	19	34,923	37	114,847	△18	△79,924	
유	13	17,721	28	33,919	△15	△16,198	· 유치원 신설 감소 (28개원→13개원)
초	3	8,285	4	40,029	△1	△31,744	· 준공 시기 도래에 따른 건설비 감소
중	2	3,634	3	22,125	△1	△18,491	· 준공 시기 도래에 따른 건설비 감소
고	1	5,283	1	18,224	-	△12,941	· 준공 시기 도래에 따른 건설비 감소
특 수	-	-	1	550	△1	△550	· 미편성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8499 ('21.11.12)

○ 학교신설 예정 학교중 (가칭)서울강현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기준가격이 122억 4,600만원으로

- 1건당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당해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 지난 10월 15일, 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가 11월 26일, ‘심사보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고려하여 소요예산 편성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실증축은 '21년도 추경예산(246억 7,200만원) 대비 △8.4%, △20억 8,300만원 감액된 225억 8,900만원으로, 교실증축 학교수는 '21년도 (25개교) 보다 △10개교 감소하여 15개교에 대한 교실증축 경비가 반영된 것임

〈표 2-62〉 2022년도 교실증축 편성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사 유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합 계	15	22,589	25	24,672	△10	△2,083	
유	1	2,295	9	6,334	△8	△4,039	· 물량 감소 (9개원→1개원)
초	8	11,855	12	14,016	△4	△2,161	· 물량 감소 (12교→8교)
중	6	8,439	4	4,322	△2	4,117	· 물량 증가 (4교→6교)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8499 ('21.11.12)

□ **학교급식환경개선**

- 급식시설개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059)
- 급식실및학생식당증축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064)

○ **학교급식환경개선**(교육시설안전과)은 '21년도 추가경정예산(480억 4,600만원) 대비 △36.0%, △172억 9,800만원 감액된 307억 4,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63〉 2022년도 「학교급식환경개선」 편성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물 량	예 산 액	물 량	예 산 액	물 량	예 산 액	증 감 륜
합 계	77	30,747	98	48,046	△21	△17,298	△36.0
급식시설개선	45	11,483	47	9,786	△2	1,697	17.3
급식실 및 학생식당증축	32	19,265	51	38,260	△19	△18,995	△49.6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8499 ('21.11.12)

○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은 금년도 추경예산(382억 6,000만원) 대비 △49.6%, △189억 9,500만원 감액된 192억 6,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서울시교육청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2년도에는 초·중·고 29개교에 대한 증축설계비와 시설비를 계상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20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동 사업 대상학교중 당서초, 염동초, 장승중의 경우, 기준가격이 각 109억 3,600만원, 53억 3,700만원, 43억 2,400만원으로 1건당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 지난 10월 15일, 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가 11월 26일, ‘심사보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고려하여 소요예산 편성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학교시설확충**

- 강당겸체육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070)
- 기타증축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076)

○ **학교시설확충**(교육시설안전과)은 '21년도 추가경정예산(567억 8,200만원) 대비 △35.5%, △201억 5,100만원 감액된 366억 3,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대상 학교수는 △17개교 감소한 31개교로 확인됨

〈표 2-64〉 2022년도 「학교시설확충」 편성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물량	예산액	물량	예산액	물량	예산액	증감률
합 계	31	36,631	48	56,782	△17	△20,151	△35.5
강당겸체육관	24	30,364	34	43,244	△10	△12,880	△29.8
기 타 증 축	7	6,267	14	13,538	△7	△7,271	△53.7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8499 ('21.11.12)

○ 강당겸체육관은 '21년도 추가경정예산(432억 4,400만원) 대비 △29.8%, △128억 8,000만원 감액된 303억 6,400만원으로, '21년도(34개교) 보다 강당겸체육관 증축 학교수는 △10개교 감소하여 24개교에 대한 증축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검토됨

- 당초 강당겸체육관 증축대상 학교중 연가초 등 18개교는 개축예정, 사전 절차 미이행 등으로 '22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나
- 금번 예산안에 편성요청된 강당겸체육관 증축예정 학교중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의결된 당서초 등 6개교는 '21년 11월 현재, 해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표 2-65〉 2022년도 강당겸체육관 편성현황

(단위 : 개교)

대 상 년 도	대 상 학 교 수	기편성학교수	2022년도 예산안	미편성학교수
합 계	94	52	24	18
2 0 1 8 년 도	17	15	2	-
2 0 1 9 년 도	40	27	6	7
2 0 2 0 년 도	10	4	6	-
2 0 2 1 년 도	12	6	1	5
2 0 2 2 년 도	11	-	5	6
특 별 교 부 금 사 업	3	-	3	-
개 방 형 체 육 관 사 업	1	-	1	-

○ 기타증축은 특별교실 및 연결통로 등의 증축을 위한 것으로 '21년도 추경 예산(135억 3,800만원) 대비 △53.7%, △72억 7,100만원 감액된 62억 6,700만원을 편성한 바,

- ①특별교실 증축을 위해 3개교 43억 1,600만원, ②연결통로 증축에 2개교 5억 4,900만원, ③ 그 외 기타시설 증축 2개교 14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학교시설환경개선**

- 그린스마트스쿨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080)
- 노후교사개축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087)
- 노후시설개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090)
- (꿈담)디자인혁신사업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153)

○ **학교시설환경개선(교육시설안전과)**은 '21년도 추가경정예산(7,158억 2,300만원) 보다 △34.4%, △2,464억 5,200만원 감액된 4,693억 7,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66〉 2022년도 「학교시설환경개선」 편성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물량	예산액	물량	예산액	물량	예산액	증감률
합	계	1,642	469,371	3,303	715,823	△1,661	△246,452	△34.4
	그린스마트스쿨	59	52,020	5	3,889	54	48,131	1,237.6
	노후교사개축	7	18,424	3	1,490	4	16,934	1,136.5
	노후시설개선	1,569	348,667	3,283	701,684	△1,714	△353,017	△50.3
	디자인혁신사업	7	50,260	12	8,760	△5	41,500	473.7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8499 ('21.11.12)

- **그린스마트스쿨**(교육시설안전과)은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건물을 선정하여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개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도 추가경정예산(38억 8,900만원) 대비 1,237.6%, 481억 3,100만원 증액된 520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2-67〉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륜
합	계	52,020	3,889	48,131	1,237.6
	B T L 사 업 운 영	3,693	-	3,693	순증
	개 축 타 당 성 검 토 용 역	200	-	200	순증
	공립초(설계공모보상비, 설계비, 시설비)	33,719	-	33,719	순증
	그린스마트미래학교운영	3,421	-	3,421	순증
	그린스마트스쿨 지원 사업 분담금	1,677	559	1,118	200.0
	긴급시설보수비	2,100	-	2,100	순증
	도시계획완화변경용역	200	100	100	100.0
	미래학교조성지원	99	-	99	순증
	사전기획용역	1,010	2,880	△1,870	△64.9
	설계공모보상비	5,900	-	5,900	순증
	타당성조사용역및수수료	-	350	△350	△100.0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의 경우, '22년도 보통교부금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항목 3,070억 2,000만원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 회계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520억 2,000만원에 대하여는 운영비, 건설비, 학교회계전출금 등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사전절차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550억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하여 기금의 지출계획 중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함과 동시에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바, 이는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나,

■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사업비 재정흐름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초래하고, 재원규모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에 대한 총괄적 재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중 **둔촌초**(155억 5,800만원) 및 **위례초**(181억 6,100만원) 노후교사 개축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및 시설비 등의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기준가격이 둔촌초 348억 5,500만원, 위례초 371억 1,1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당해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 지난 10월 15일, 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가 11월 26일, '심사보류'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고려하여 소요예산 편성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중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동구로초등 9개교에 대한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지난 10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 지난 11월 26일, 교육위원회가 ‘심사보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고려하여 소요예산 편성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린스마트스쿨은 '20년 6월 수립한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 추진계획」에 따라 '21년도부터 5년간 총 213개교에 대하여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표 2-68〉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현황

(단위 : 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 도 별 계	213	57	43	40	35	38
개 축	93	35	18	15	11	14
리 모델링	120	22	25	25	24	24

-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로 개축·리모델링 철회 사례가 있어 학교가 사업철회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 대상이 준공 이후 40년이 경과된 건축물임을 감안하여 교육시설물 안전에 대한 대안모색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후시설개선은 '21년도 추가+경정예산(7,016억 8,500만원) 대비 △50.3%, △3,530억 1,900만원 감액된 3,486억 6,600만원으로

- 학교현장의 노후시설 개선요청에 대하여 세세부사업별 분류에 따라 현장실태조사(노후도, 관리상태, 안전성 등)와 우선순위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설사업비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단위사업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됨

- 당초 교육비특별회계중 교육환경개선 사업내역으로 편성하던 ①냉난방개선, ②석면제거사업은 '22년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정례회 안건으로 관련 기금 운용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2-69〉 2022년도 노후시설개선 편성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추경예산(B)		증 감 ( A - B )		
	물량	예산액	물량	예산액	물량	예산액	증감률
합 계	1,569	348,666	3,283	701,685	△1,714	△353,019	△50.3
화 장 실 개 선	85	17,978	114	29,947	△29	△11,969	△40.0
전기시설개선	146	18,823	225	19,574	△79	△751	△3.8
냉 난 방 개 선	-	-	142	38,893	△142	△38,893	△100.0
창 호 개 선	154	45,804	65	20,545	89	25,259	122.9
외 벽 개 선	42	18,262	59	21,554	△17	△3,292	△15.3
소방시설개선	77	16,139	107	8,512	△30	7,627	89.6
방 수 공 사	224	30,551	293	32,879	△69	△2,328	△7.1
바 닥 개 선	98	26,825	82	14,531	16	12,294	84.6
도 장 공 사	43	2,822	40	3,175	3	△353	△11.1
외부환경개선	131	13,091	75	5,954	56	7,137	119.9
기 타 사 업	324	69,275	1,496	341,850	△1,172	△272,575	△79.7
장애인편의시설	68	14,622	67	19,313	1	△4,691	△24.3
내 진 보 강	4	20,957	4	22,066	0	△1,109	△5.0
드라이비트해소	54	24,091	68	28,097	△14	△4,006	△14.3
샌드위치판넬제거	10	1,191	12	2,601	△2	△1,410	△54.2
석 면 제 거	-	-	129	63,126	△129	△63,126	△100.0
정 밀 점 검	102	27,485	290	27,961	△188	△476	△1.7
적정규모육성학교	7	750	15	1,107	△8	△357	△32.2

## 5) 직속기관

### □ 사이버가정학습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165)

- **사이버가정학습운영**(교육연구정보원)은 '21년도 추가경정예산(3억 2,400만원) 보다 278.3%, 9억 200만원 증액된 12억 2,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70〉 2022년도 사이버 가정학습운영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	증 감 액	증 감 륜
합	계	1,227	324	902	278.3
	메 타 버 스 구 축	1,200	-	1,200	순증
	사 이 버 학 급 운 영	27	28	△1	△3.5
	사이버학습콘텐츠운영	-	296	△296	△100.0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8499 ('21.11.12)

- 가상공간에서의 미래학습역량 함양을 위한 **메타버스 구축**(12억원)중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프로그래밍 10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사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여야 하나,
  - 동 사업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되어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소요예산이 편성요청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됨